

감리지적사례 FSS/2112-08 : 매도가능증권 과소계상

- 쟁점 분야: 매도가능증권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 결정일: 2012년
- 회계결산일: 2011.1.1.~2011.6.30.

1. 회사의 회계처리

타이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이하 ‘회사’)는 소유하고 있는 국채, 지방채, 카드채 등의 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 이를 수탁하고 있는 B증권사의 잔고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가 소유한 국공채 등의 매도가능증권은 증권거래소 및 장외시장을 통하여 거래가 되고 있는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이므로 시가로 평가된 금액(2,344억원)으로 계상해야 함에도 증권사 잔고증명서 금액(2,295억원, 고객 매수금리로 할인한 현재가치 등)으로 평가함으로써 매도가능증권을 49억원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문단43 및 문단48에 따르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며 활성시장이 없다면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근거로 금융상품을 평가하였으나,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시가 평가하지 않은 것은 기업회계기준서의 금융상품 평가에서 요구하는 공정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시사점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평가방법 등 기업회계기준서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다.